

정 관

LS[→]**ELECTRIC**

LS ELECTRIC Co., Ltd. 정관

제정 : 1974년 7월 10일

개정 : 1985년 2월 28일

개정 : 1986년 12월 16일

개정 : 1987년 2월 11일

개정 : 1987년 2월 25일

개정 : 1987년 3월 14일

개정 : 1987년 4월 11일

개정 : 1987년 5월 26일

개정 : 1987년 10월 29일

개정 : 1988년 2월 29일

개정 : 1989년 2월 28일

개정 : 1989년 4월 28일

개정 : 1990년 4월 10일

개정 : 1992년 2월 29일

개정 : 1993년 1월 21일

개정 : 1993년 3월 2일

개정 : 1994년 2월 28일

개정 : 1995년 2월 17일

개정 : 1995년 9월 15일

개정 : 1996년 2월 28일

개정 : 1997년 2월 27일

개정 : 1998년 3월 24일

개정 : 1999년 2월 20일

개정 : 2000년 3월 18일

개정 : 2001년 3월 23일

개정 : 2002년 3월 22일

개정 : 2003년 2월 27일

개정 : 2004년 2월 27일

개정 : 2005년 3월 11일

개정 : 2006년 3월 3일

개정 : 2007년 3월 9일

개정 : 2008년 3월 7일

개정 : 2009년 3월 19일

개정 : 2010년 3월 19일

개정 : 2011년 3월 18일

개정 : 2012년 3월 16일

개정 : 2013년 3월 22일

개정 : 2016년 3월 18일

개정 : 2019년 3월 26일

개정 : 2020년 3월 24일

개정 : 2020년 3월 24일

개정 : 2020년 3월 24일

개정 : 2021년 3월 29일

개정 : 2022년 3월 28일

개정 : 2023년 3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LS일렉트릭주식회사라 칭하며, 한글로는 엘에스일렉트릭주식회사로 하고 영문으로는 LS ELECTRIC Co., Ltd.로 표기한다. (2020. 3. 24 개정)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전기기기와 동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 2) 전자기기, 정밀기기, 의료기기와 동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 3) 계측, 계량기기와 동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 4) 계량기기, 전기기기 및 동 시스템에 대한 시험서비스 및 용역제공
- 5) 전력기기 및 전력설비의 예방 보전 및 진단 사업
- 6) 전력품질향상 Solution 사업
- 7) 직접부하제어, 부하관리 및 전력부하 참여 운영 사업
- 8) 전력거래 사업
- 9) 정보기기와 동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 10) 자동화기기와 동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 11) (삭제) (2010. 3. 19 삭제)
- 12) (삭제) (2010. 3. 19 삭제)
- 13) (삭제) (2007. 3. 9 삭제)
- 14) 산업용 로봇과 동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 15) (삭제) (2010. 3. 19 삭제)
- 16) 교통통제, 신호기와 동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 17) 각종 제어기기와 동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 18) (삭제) (2010. 3. 19 삭제)
- 19)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와 동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 20) 산업처리 자동측정, 제어장치와 동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 21) 대기오염방지, 소음진동방지, 수질오염방지,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및 시공, 폐기물 처리 및
재생 등 환경관련시설업
- 22) 건물설비 설치공사,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대행업
- 23) 사업시설 운영관리, 경영상담, 용역경비업(시설, 기계 경비), 청소위생관리업
- 24) (삭제) (2010. 3. 19 삭제)
- 25) (삭제) (2010. 3. 19 삭제)
- 26) (삭제) (2010. 3. 19 삭제)
- 27)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제품 매매 및 관련 부대 사업
- 28) 상기 관련 제품의 제조에 따른 부산물의 가공 및 판매
- 29)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주택관리업
- 30)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플랜트설계·제작 시공업
- 31) 무선통신기기, 전자태그와 동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 32) 무선통신 Solution 사업
- 33) 자동차용 전장 부품 사업 (2006. 3. 3 추가)
- 34) 전력용반도체 사업 (2006. 3. 3 추가)
- 35)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소수력에너지, 조력에너지, 지열에너지, 연료전지 사업 및 기타발전
사업 (2007. 3. 9 추가)
- 36) 전동기, 발전기, 전력시스템의 제조, 판매 (2016. 3. 18 개정)
- 37) (삭제) (2019. 3. 26 삭제)
- 38) 기계, 장비와 동 부분품의 제조, 판매 (2016. 3. 18 개정)
- 39) Energy Saving 관련 제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2016. 3. 18 개정)

- 40) 빌딩자동화기기 및 동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2016. 3. 18 개정)
- 41) LED 조명기기와 동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2016. 3. 18 개정)
- 42) 지능형 전력망, 전력선 통신기기와 동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2016. 3. 18 개정)
- 43) 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산물 창고업, 기타보관 및 창고업 (2016. 3. 18 개정)
- 44) 축전지와 동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 (2016. 3. 18 개정)
- 45) 스마트 공장 솔루션 자문, 중개 및 유지보수업 (2019. 3. 26 추가)
- 46) 전기차 충전/방전 서비스 사업, 전기차 충전/방전 인프라 구축 사업 (2022. 3. 28 추가)
- 47) 전기차 충전기, 충전/방전 설비 제조, 판매 (2022. 3. 28 추가)
- 48)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건설공사업 (2022. 3. 28 개정)
- 49)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유지보수업, 설치공사업 및 진단점검사업 (2022. 3. 28 개정)
- 50)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022. 3. 28 개정)
- 51)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수출입업과 무역중개업 (2022. 3. 28 개정)
- 52)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설비 수출업 및 해외 건설공사업 (2022. 3. 28 개정)
- 53)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용역업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022. 3. 28 개정)
- 54)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일체의 부대사업 (2022. 3. 28 개정)
- 55) 상기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2022. 3. 28 개정)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이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안양시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2008. 3. 7 개정)

제4조(공고 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s-electric.com](http://www.ls-electric.com))에 게재한다. 단,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021. 3. 29 개정)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억주로 한다.

제5조의2(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오천원으로 한다.

제6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6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기명식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2 범위 내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5%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⑦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누적된 미배당분 및 그 후의 우선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존속기간 만료 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2019. 3. 26 개정)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2019. 3. 26 개정)

제8조(삭제)

제8조의2(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단, 5호 내지 7호에 대한 신주배정은 각 호의 배정비율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1. <삭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신주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경영상 필요로 합작투자선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거래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기술도입을 위해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8조의3(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이천억원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 일천억원 범위 내에서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4(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일천억원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 일천억원 범위 내에서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5(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의결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012. 3. 16 개정)

제8조의6(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7(삭제)

제8조의8(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의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016. 3. 18 개정)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의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는 기발행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기발행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기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 경우
 3. 이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의9(시가발행)

- ①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10(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2019. 3. 26 신설)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21. 3. 29 개정)

제9조(삭제)

제9조의2(명의개서 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이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2019. 3. 26 개정)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2021. 3. 29 개정)

제9조의3(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2019. 3. 26 신설)

제9조의2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019. 3. 26 신설)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2조의2(권리자의 등록)

- ① 주주, 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성명, 명칭,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주주, 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 및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전 각 항의 등록을 해태함으로써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기준일) (2021. 3. 29 개정)

- ① (삭제)
-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로 하여금 당해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제13조의2(주주명부 작성·비치) (2021. 3. 29 신설)

-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당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4조(삭제)

제3장 주 주 총 회

제15조(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삼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6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 타 이사가 신임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이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이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인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이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2010. 3. 19 개정)

제18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에 따라 타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주주의 의결권)

주주는 그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2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2021. 3. 29 개정)

제2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 회사에 보존한다.

제4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25조(삭제)

제26조(이사의 선임)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로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사외이사는 3인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각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2008. 3. 7 개정)
- ③ 이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④ 이 회사는 이사의 선임 시 상법 제382조의2에 의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의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7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8조(이사의 결원)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사에 결원이 생겨도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때에는 차기 정기총회까지 그 보선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사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삭제)

제30조(이사의 직무)

- ① 이사회는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는 각자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는 구성원으로서 관련 법령과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2008. 3. 7 개정)
- ③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결정한 순서에 따라 타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의2(비등기임원) (2016. 3. 18 개정)

- ① 이 회사는 이사회는 결의로 비등기임원을 둘 수 있다. (2016. 3. 18 개정)
- ② 비등기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2016. 3. 18 개정)

- ③ 비등기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6. 3. 18 개정)
- ④ 동조 ①, ②, ③에서 비등기임원이라 함은 등기된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에 준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016. 3. 18 개정)

제30조의3(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30조의4(이사의 회사에 대한 감경) (2016. 3. 18 개정)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의 책임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2016. 3. 18 개정)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 3. 18 개정)

제31조(이사회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의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타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주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의장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일 12시간 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3. 3. 22 개정)

제32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의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기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013. 3. 22 개정)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5조(감사위원회)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6조의2(삭제)

제37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5장 계 산

제38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②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일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2010. 3. 19 개정)

제40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① 이익준비금
- ② 기타의 법정적립금
- ③ 배당금
- ④ 임의적립금
- ⑤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1조(이익 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012. 3. 16 개정)
-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사업년도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③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41조의2(중간 배당)

-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중간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중간 배당의 구체적인 방법, 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의3(주식의 소각)

-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본점 이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서 정한 일자로부터 시행한다. (2008. 3. 7 개정)

이 정관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009. 3. 19 개정)

이 정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상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2010. 5. 29부터 시행한다. (2010. 3. 19 개정)

이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011. 3. 18 개정)

이 정관은 제38기 주주총회에서 승인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 제30조의4, 제33조, 제41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12. 3. 16)

이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13. 3. 22 개정)

이 정관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016. 3. 18 개정)

이 정관은 제4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의10, 제9조의2, 제9조3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019. 3. 26 개정)

이 정관은 제46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3. 24 개정)

이 정관은 제47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 3. 29 개정)

이 정관은 제48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3. 28 개정)

이 정관은 제49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 3. 28 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3조(사 칙)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경영상 필요한 사규를 정할 수 있다.